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생태산업개발,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청정생산 및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금속자원 재자원화 지원요건,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 제3조의2제2항에 신설함에 따라 조문 내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안 제2조의2제2항)
- 나.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안 제3조제1호, 안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 1) 「산업발전법」 개정(제14109호, 2016.3.29)으로 “사업자단체”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안 제3조제1호, 제10조제3항)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제18432호, 2021.8.17.)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칭이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안 제10조제1항제6호)

다. 설비자금 등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을 추가(안 제3조의5 신설)

라. 법률 개정으로 “녹색경영컨설팅”이 “청정컨설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제목 등을 변경하고, 청정컨설팅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 (안 제9조의2)

마. 법률 개정으로 지원 및 출연의 근거가 되는 조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바.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전담기관의 업무 등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와 청정생산사업장 구축·확산 지원을 추가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사. 산업의 저탄소화·친환경 전환 지원을 위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을 추가(안 제11조의4)

아.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자원화 지원요건 등을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자. 법 제22조제5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삭제 (안 제20조제3항 삭제)

차.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20조의2 신설)

카.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 표시 기준 등을 규정(안 제21조의4 신설)

타. 법률 개정예 따라 변경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반영 (안 제28조)

파. 법률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삭제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안 제29조,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

-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그 밖의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제9조의2의 제목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을 “(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청정컨설팅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녹색경영컨설팅”을 “청정컨설팅”으로 한다.

제9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종별 저탄소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 청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용자·보조 등의 지원

제10조제1항제6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법」 제32조 또는 「산업발전법」 제38조”를 “「민법」 제3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의3 후단”을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으로,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후단”을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의3 전단,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전단”을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제5호”를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태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로 한다.

제11조의2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 생태산업개발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을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확산 지원 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추진을 위한”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청정생산사업장 구축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을 “지정, 지정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원료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및 제공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자원화 지원요건 등) 법 제20조의3제2항에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산업수요에 따른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속자원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한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그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

을 따른다.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제21조의2제2항”을 “제20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7.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시

8.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9.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 전담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고된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생략)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 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3조(사업자단체) ----- ----- ----- ----- -----

를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3. (생략)

<신설>

제9조의2(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 중앙회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5(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그 밖의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 -----

-----.

1. <u>녹색경영컨설팅사업</u>의 창업 지원 2. <u>녹색경영컨설팅사업</u>에 관한 홍보 3. <u>녹색경영컨설팅</u> 정보망의 구 축 및 운영 <u><신 설></u> <u><신 설></u>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5의3. (생 략)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u>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u> 7.·8.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u>민법</u>」 제32조 또는	1. <u>청정컨설팅사업</u>----- -- 2. <u>청정컨설팅사업</u>----- -- 3. <u>청정컨설팅</u> ----- ----- 4. <u>업종별 저탄소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컨설팅 서 비스의 제공</u> 5. <u>청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용 자·보조 등의 지원</u>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① ----- ----- -----. 1. ~ 5의3. (현행과 같음) 6. ----- ----- ----- <u>한</u> <u>국환경연구원</u>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민법</u>」 제32조-----
---	--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
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6조의
3 후단, 제17조제2항 후단, 제21
조제2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
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
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
제2항, 제16조의3 전단, 제17조
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
항 전단, 제23조의4 또는 제23
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
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

----- 제9조의2
제2항, 제15조제3항----- 제20
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
조제7항-----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
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있다.

④·⑤ (생략)

제11조의2(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3. 생태산업단지 성공사례의 홍보

<신설>

<신설>

<신설>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

-----.

1.·2. (현행과 같음)

3.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 -----

--

4. 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 생태산업개발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확산 지원 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

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정, 지정 기간 -----
-----.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

-----.

1.·2. (현행과 같음)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원료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및 제공

제19조의2(재자원화 지원요건 등) 법 제20조의3제2항에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①·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2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
에 대한 품질인증의 기준(품질
· 성능기준, 품질·성능평가방
법과 공장심사기준을 말한다)·
절차(품질·성능평가절차와 공
장심사절차를 말한다) 및 사후
관리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1. 국내 산업수요에 따른 금속
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
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
한 경우

3. 그 밖에 금속자원 재자원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
정하는 경우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①·② (현행과 같
음)

<삭제>

제20조의2(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 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한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제조 대상 제품의 요건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의 대상 제품의 요건과 기준은 제품을 재제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 재製조를 금지한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의2(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품질보증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삭 제>

간(이하 이 조에서 “신제품품질보증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이하 “인증재제조제품”이라 한다)의 품질이 신제품의 품질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재제조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신제품품질보증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

제21조의4(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그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행 기관의 지정 및 자금 지원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4. (생략)

5. 제20조제3항에 따른 고시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고시

<신설>

<신설>

<신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진단·지도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0. (현행 제4호와 같음)

<삭제>

<삭제>

7.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시

8.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기관의 지정 및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9.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 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

<삭제>

<삭제>

<u>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연 락 처	(044) 203 - 4246